

##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4
--------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7. 4  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7129호)에 의한 「전자공인」을 「전자이미지관인」으로 용어 통일
- 나. 정부의 전자정부구현으로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 자동발급 되는 추세에 따라 각종 증명서에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규정 신설
- 다.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등록, 재등록, 폐기시에 부산광역시에 신고조항 삭제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「전자이미지관인」으로 용어 통일 (안 제2조제7항, 제2조제8항, 제9조, 제15조 제3항)
- 나. 각종 증명서에 전자이미지관인 사용규정 신설 (안 제2조제8항)
- 다. 공인의 등록, 재등록, 폐기시에 부산광역시에 신고조항 삭제 (안 제10조)

### 3. 관계법령

- 가.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) 제36조, 제41조

##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7항의 본문중 “전자공인”을 각각 “전자이미지관인”으로 하며 동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⑧ 구청장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운용을 위하여 민원증명용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.

제9조의 본문 중 “전자공인”을 “전자이미지관인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제15조 제3항의 본문중 “전자공인”을 “전자이미지관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공인의 비치사용) ① ~ ⑥ (생략)	제2조(공인의 비치사용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구청장, 소속행정기관장, 동장, 사업소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“전자공인”을 가질 수 있으며,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	⑦ ----- ----- “전자이미지관인”-----, 전자 이미지관인----- -----
⑧ 구청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기용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.	⑧ 구청장은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운용을 위하여 민원증명용 전자이미지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직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.
제9조 (공고) 공인을 신조·개인하거나 개인,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 전자공인은 제외한다.	제9조 (공고) ----- ----- ----- 전자이미지관인-----
제10조 (신조 또는 개각된 공인의 등록 신청 및 공인 폐기 신고)	<삭제>
① 신조·개각 또는 폐기되는 구청장 공인(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제외한다)은 사무관리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공인인영(신조, 개각 공인과 폐기 공인 구분) 3부를 첨부하여 공인의 신조, 개각·폐기 즉시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(재등록을 포함한다) 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.	
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.	

